

지식재산
가치를 담은
미래를 빛다

질의답변집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S 등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향후 청년실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IP 분야인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IP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p>(유사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IP는 무엇일까요? · 앞으로 가치있는 미래의 지식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현황과 향후 미래 동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술, ② K-콘텐츠 관련 기술, ③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현재 세계를 리딩하는 기술, ④ 탄소 중립사회를 구현하는 녹색 에너지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그런 기술개발 위주였지만,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영역이나 다른 기술영역 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분야가 주력 기술개발 분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가 복잡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IP로 창출이 되고 사업화가 되는 지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지재위에서는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 핵심 융합 특허에 대한 확보방안' 등 국가 차원의 핵심IP 도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전문위 차원에서 논의 중입니다. 	<p>사전질의3 - 성균관대학교 김재훈 교수 (현장답변)</p>

질의	답변	비고
<p>· 중소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출원 등록하는 지식재산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할 때 처음부터 특허의 방향과 전략을 고민 하면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p>	<p>·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 IP가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후 분쟁이 많이 생기며, 특히 해외 진출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는데, 정부 바우처 제도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장 비전과 전략을 미리 짜고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유망한 지 기술로드맵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역 대학이나 공동연구나 협력을 통해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사전질의2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현장답변)</p>
<p>· 지식재산은 정말 돈이 될까요?</p>	<p>· 지식재산의 자산 및 재화로서의 가치는 현재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구성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금융시장에서 담보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화로서도 특허의 경우 IP-MARKET 등 기술거래시장에서 직접 가치를 평가받으며 거래되기도 하고, 저작권 역시 최근 이슈가 된 '뮤직카우'와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M&A, 상장평가 등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례로 스마트홈 관련 기술의 특허를 132개 보유하였던 스타트업 nest社は 구글에 32억 달러에 인수('14.1월)되었으나, 유사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못했던 SmartThings社は 삼성에 2억 달러에 인수('14.8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특허가 기술패권을 좌우하고, '오징어게임'과 같이 콘텐츠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오늘날, 지식재산은 앞으로도 그 가치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 ('75)17% → ('95) 68% → ('15)84% → ('20)90%</p>

질의	답변	비고
<p>· 지식재산의 가치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p>	<p>· 지식재산(특허)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치산정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P 금융 및 기술거래 등을 위한 가치산정에 널리 활용되는 SMART3* 시스템에서는 특허를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권리성’, ② 현재 기술동향 및 수준에 비추어 발전된 정도나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술성’, ③ 해당 특허가 사업화 및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인 ‘활용성’의 지표로 평가합니다.</p>	<p>* 한국·미국·유럽의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개별 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 등으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등급 평가시스템 (smart.kipa.org)</p>
<p>·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그리는 IP자산유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미래청사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p>	<p>· ’21. 10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최근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도 당장의 매출이 없으면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허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2조원 규모의 IP 담보대출과 함께 혁신적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생존 및 성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우수 기술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장되지 않고, 오히려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어 기업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p>	<p>* 하나 이상의 IP를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p>
<p>· 지식재산의 특허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p>	<p>· 발명(기술개발)을 한 경우 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② 특허청에 출원, ③ 심사 청구, ④ 심사 후 결과 통보(특허청), ⑤ 설정수수료 납부 등 등록 절차 수행 의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됩니다. 개인출원도 가능하나, 특허명세서 작성 및 특허 등록 가능성(선행기술조사) 판단 등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p>	<p>사전질의2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현장답변)</p>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특허권 포기 등이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재권 보호 유예에 관한 WTO/TRIPs*의 논의는 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백신 공급의 확대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논의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노하우·인력 등이 이전·공급되어야 하므로, 백신 관련 지재권 보호 면제 조치가 백신의 원활한 공급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례는 추후 개발자(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하게 하거나, 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s : 가맹국에게 자국 영토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협정. 89년 체결되었으며, '94년 출범한 WTO의 부속 협정으로 채택. ※ 지재위 홈페이지 (ipkorea.go.kr) 내 자료실 Bio-IP 이슈 페이지(제2호)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가 지식재산에 미친 영향이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산업이 위축된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진단기술 관련 특허 및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카, 실감영상, 라이브커머스 기술 등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문화 변화는 지식재산 측면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NA 백신 관련 특허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청에서 발간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바이오-IP 이슈 페이지' 제2호를 참조해 주세요.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저와 같은 대학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침해 받을 수 있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 소양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미 FTA 당시 지재권 관련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국민적 관심도, 중요도가 낮아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재권이 법률적인 전문영역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p>사전질의5 - 특허법인 플러스 박창희 변리사 (현장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작사 싸이런픽처스의 오징어게임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는데 막대한 흥행수입의 대부분을 미국 OTT기업 넷플릭스가 독식을 한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정한 제작비만 받고 넘겼기 때문인데 국내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과 정부는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p>(유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득은 넷플릭스사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제작사간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인 만큼, 현재로서는 그 계약조건을 벗어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비단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사와 주제작사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보다 우수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생산에 기여한 참여자가 조금은 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당사자 간 계약이외에도 이러한 취지의 제도, 권고 안 등이 마련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물에 대해 발생하는 저작권 또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오징어게임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인 싸이런픽처스가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에 양도한 것입니다. 특정 콘텐츠의 성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정부는 콘텐츠 등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수시로 청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비고
<p>· 국외 세력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한 걸로 아는데, 우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중이신가요?</p>	<p>· 정부는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원을 위해 IP-DESK와 저작권해외사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IP-DESK는 17개 지역(중국(5개 지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독일, 러시아, 멕시코)에 설치되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및 절차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해외사무소는 4개 지역(중국, 하노이, 필리핀, 태국)에 설치되어, 해외 현지에서 저작권 관련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 IP-DESK : www.kotra.or.kr 참조</p> <p>* 저작권해외사무소 : www.copyright.co.kr 참조</p> <p>· 온라인 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국 저작권 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불법저작물, 위조상품 등)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p> <p>* 한국저작권보호원 : www.kcopa.or.kr 참조</p> <p>*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www.koipa.re.kr 참조</p> <p>·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각각 특별사법경찰이 조직되어, 불법저작물, 위조상품, 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하여 신고 접수 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p>	
<p>·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국내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지키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과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혁신성장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 경쟁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①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아이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도입, ② 상표 침해만 수사하던 특별사법경찰(특허청)의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로 확대 ③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중국에서 아세안 6개국과 대만까지 확대 등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또한 ④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지식재산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보호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p>	

보호

지식재산 가치를 달리 미래를 본다

질 의	답 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제품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는 특허법에서 형사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서 형사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내에서 불법유통, 이용되는 우리나라 콘텐츠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협의된 사항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국간 협의된 사항은 없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에서 불법 유통되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여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 현황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iti.kipo.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등에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 재편에 따른 한국의 IP보호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VC 재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중심에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경쟁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자국 내의 기술혁신 활동을 유인하는 작용을 합니다. 중국이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관련 특허출원 점유율이 전세계 1위를 차지('19년 獨 IP 리틱스 발표)하고, '20년 국제특허출원도 전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기술안보 전략으로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지식재산이 작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를 다져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성 들여 쓴 글이 가끔 다른 곳에 퍼 날라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을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개인이 쓴 일기와 같은 글에도 저작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발생되며, 등록과 같은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성 들여 쓴 글에도 저작권이 발생되어 보호가 가능합니다.	* (저작권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

신지식재산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및 융합형 콘텐츠의 도입으로 지식재산의 개념과 영역 확장이 하루가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법적, 제도적인 틀에 맞춰 원활하게 관리하고 이에 관련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p>(유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으로 인정되는 종류와 범위들이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맞춰 새롭게 적용될 기준이 궁금합니다. ·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국내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지키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과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던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고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확산되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 현재는 더 빨라지고 있으며, 그 속도에 맞게 법이나 제도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절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대응책이 제안되었고, 법이나 제도에 반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내외적으로 신기술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p>사전질의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정숙 책임연구원 (현장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p>(유사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처럼 가상현실에서도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는지, 아직 존재하지 않다면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진행단계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존하는 건축물이나 조각상 같은 사물을 가상의 세계에 재현했을 경우 저작물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가 놀이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명 상표를 사용해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도 있으며, 유명인사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입학식, 신곡 발표, 팬사인회, 콘서트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공연의 경우 공연인지 공중송신인지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재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하여 법률적인 다양한 이슈가 있으나 현재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이므로 일률적인 법적 재단 보다는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p>사전질의4 - 남서울대학교 송은지 교수 (현장답변)</p>

질의	답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의 정의, 그리고 현재 지식재산을 인정하는 범위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 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②저작권(어문, 음악 등 창작물), ③신지식재산권(SW, 영업비밀, 신제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떤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거시적인 비전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본격화와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환경에서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실현”을 목표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수립(‘21.12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IP 확보 및 선제적 법제 정비, IP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시장 육성, IP 보호체계 재편 및 글로벌 IP 인재양성 및 협력 강화 등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p>사전질의4 - 남서울대학교 송은지 교수 (현장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열한 지식재산 경쟁 시대에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나 위상이 어느 정도로 보는지 냉정한 평가가 궁금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국제특허(PCT) 출원*은 지난 해 독일을 제치고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또한 게임, 음악, 영화 등 신한류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 수출 규모는 1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콘텐츠 수출국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의 결과로 UN 산하 국제지식재산기구(WIPO)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20, 37위) 등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p>* 특허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16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로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 국내 출원한 효과를 가짐</p> <p>** 세계지식재산 기구와 유럽경영대학 등이 1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혁신 역량을 측정해 각국 공공정책 또는 경영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p>

질의	답변	비고
<p>·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국민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을 주제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11) 및 지재위 출범('11) 10주년을 맞아 대국민 슬로건 공모, 대학(원)생 지식재산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지식재산의 날(9.4) 기념식, 10주년 대국민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주기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이슈나 설명자료를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p>	<p>* 지재위 홈페이지 www.ipkorea.go.kr 지식재산의 날 홈페이지 www.ip-day.co.kr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 운영중</p>

지식재산
가치를 담은 미래를 빛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